

종 자 산 업 법 시 행 규 칙 일 부 개 정 령 안

2020. . . .

국무위원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1. 개정이유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신고 시 취득경로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자료를 첨부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종자산업법」(법률 제16789호, 2019. 12. 10. 공포, 2020. 06. 1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입증자료 제출대상 작물과 입증자료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검역회피 등 불법·불량 종자 수입을 차단하기 위해 수입 판매신고하려는 모든 종자에 대해 검역 증명서류를 첨부하도록 하는 한편, 묘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품질표시 사항을 간소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수입 판매신고 종자의 검역증명서류 제출 근거 보완(안 제27조제1항 5호)

- 1) 검역회피 등 불법·불량 종자 수입을 차단하기 위해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품종의 종자를 신고하는 경우 해당 종자에 대한 검역합격증명서, 격리재배합격증명서 등의 검역 증명서류를 첨부하도록 함

나. 입증자료 제출대상 작물의 지정 및 자료의 범위 설정(안 제27조제1항7호)

- 1) 품목의 특수성, 권리침해 분쟁 발생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무단 도입에 따른 농가 피해 우려가 큰 외국에서 육성된 품종의 종자로서 과수작물, 고구마 및 그 밖의 농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작물에 대해

종자 취득경로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함

2) 제출해야 하는 입증자료의 범위를 외국에서 도입하는 품종의 조건에 따라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달리 정함

가)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른 신규성을 갖춘 외국보호품종의 경우, 품종보호권자로부터 해당 품종의 종자를 국내에서 증식·양도 등의 실시 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나)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른 신규성을 갖추지 못한 외국보호품종의 경우, 신규성 만료를 증명하는 서류와 해당 품종의 종자에 대한 취득경로를 명확히 알 수 있는 거래명세서 등의 증명 서류

다) 외국보호품종이 아닌 품종인 경우, 해당 품종의 종자에 대한 취득경로를 명확히 알 수 있는 거래명세서 등의 증명 서류

다. 묘목의 품질표시 사항 간소화(안 제34조제1항)

1) 씨앗종자와 달리 묘목은 거래과정에서 소비자가 어느 정도 육안으로 품질 등의 정보 파악이 가능한 상황 등을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가치가 있는 정보로 표시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해 발아율, 종자의 포장당 무게(또는 낱알 개수), 수입연월 등을 묘목의 품질표시 의무 사항에서 제외함

라. 다른 법률의 개정에 따른 근거조문 변경(안 제27조제1항4호)

1)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이 일부개정(‘12.12.11)됨에 따라 현재 유전자변형품종의 종자를 생산·수입 판매

신고하는 경우 제출해야하는 제8조제3항에 따른 위해성심사서를 제 8조 및 제12조에 따른 수입승인서 또는 생산승인서로 변경함

3. 향후 추진 일정

가. 관계기관협의 : '20. 1월

나. 입법예고 : '20. 2~3월

다. 법제처 제출 : '20. 3월

라. 공포 : '20. 5월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승인서 또는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 생산승인서 1부(유전자변형품종인 경우만 해당한다)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부(수입하여 판매하려는 경우만 해당하며, 신고하려는 자가 동의하여 산림청장 또는 국립종자원장이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운영하는 식물검역통합정보시스템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 가. 「식물방역법」 제17조에 따른 검역합격증명서
 - 나. 「식물방역법」 제13조에 따른 격리재배 검역 결과 합격을 증명하는 서류
 - 다.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수입허가된 금지품의 계속 사용 승인을 증명하는 서류
7. 과수작물(果樹作物), 고구마 및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작물의 경우 해당 품종의 종자를 정당하게 취득하였음

을 입증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부(외국에서
육성된 품종의 종자인 경우만 해당한다)

가. 국제식물신품종보호동맹(UPOV) 회원국에 출원 중이거나 등록
된 품종(이하 “외국보호품종”이라 한다)으로서 「식물신품종 보
호법」 제17조에 따른 신규성을 갖춘 경우: 권리양도서 등 해당
품종의 육성자, 승계인 또는 품종보호권자로부터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실시를 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받았
음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계약당사자의 성명, 서명, 품종 정보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서류

나. 외국보호품종으로서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17조에 따른 신
규성을 갖추지 못한 경우: 거래명세서 등 신규성을 갖추지 못하
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및 해당 품종의 종자에 대한 취득경로를
명확히 알 수 있는 서류로서 계약당사자의 성명, 서명, 품종 정보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서류

다. 외국보호품종이 아닌 품종인 경우: 거래명세서 등 해당 품종의
종자에 대한 취득경로를 명확히 알 수 있는 서류로서 계약당사자
의 성명, 서명, 품종 정보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이 포함된 서류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묘목의 경우에는 제1호 및 제5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항을 말한
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2020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품종의 생산·수입 판매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신고의무자가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품종 [] 생산 판매 신고서
[] 수입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①신고인	성 명(대표자)		생년월일(외국인은 국적)
	주 소		
	법인 명칭		전화번호
②대리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③육성자	성 명		생년월일(외국인은 국적)
	주 소		전화번호
④품종이 속하는 작물의 학명 및 일반명			
⑤품종의 명칭			
⑥품종육성 과정의 설명		(별지 사용)	수입국(원산지):
⑦품종의 특성 설명		(별지 사용)	
⑧종자업 등록번호			

- ⑨ 신고인이 위 신고 품종을 육성한 육성자입니까? [] 예 [] 아니오
- ⑩ 신고인이 육성자가 아닌 경우 증식, 생산, 판매 등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또는 이전) 받은 방법은 무엇입니까?
[] 계약 [] 상속 또는 승계 [] 기타 (㉞권리 소멸 품종, 신규성 없는 유통 품종 등)
- ⑪ 신고품종이 외국의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에 따른 특허법 또는 특별법(식물신품종보호법 등)에 의거 품종보호(또는 특허) 출원하였거나 품종보호(또는 특허) 등록된 품종입니까?
[] 예 [] 아니오(이 경우 해당 종자의 취득경로를 알 수 있는 거래명세서 등 증명서류를 제출하십시오)
- ⑫ 위 ⑪에서 '예'로 답한 경우 아래 사항 중 어느 부분에 해당합니까?
[] 식물신품종보호법 제17조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신규성을 주장할 수 있는 품종(이 경우 국내에서 해당 품종을 증식, 생산, 판매 등의 실시행위를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십시오)
[] 식물신품종보호법 제17조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신규성을 주장할 수 없는 품종(이를 증명하는 서류와 해당 종자의 취득경로를 알 수 있는 거래명세서 등 증명서류를 제출하십시오)

위 신고인(대리인)은 본 신고서에 기재된 모든 내용과 종자시료를 포함한 일체의 제출서류에 거짓이 없음을 확인하며, 「종자산업법」 제3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품종 생산·수입 판매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산 립 청 장 귀하
국 립 종 자 원 장

210mm×297mm[백상지 80g/㎡]

첨부서류	1. 신고품종의 사진이나 신고품종의 사진이 수록된 카탈로그 및 종자시료(다만, 종자시료가 묘목 또는 영양체인 경우에는 산림청장 또는 국립종자원장이 따로 제출을 요청한 시기에 제출을 요청한 장소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수입적응성시험 확인서 1부(수입적응성시험 대상작물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3.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대리인을 통하여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승인서 또는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 생산승인서 1부(유전자변형품종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5. 「식물방역법」 제17조에 따른 검역합격증명서 또는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격리재배 검역 결과 합격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수입허가된 금지품의 계속사용 승인을 증명하는 서류 1부(수입하여 판매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6. 종자업등록증 사본 1부(최초의 생산 판매 신고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7. 과수작물(果樹作物), 고구마 및 그 밖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작물의 경우 해당 품종의 종자를 정당하게 취득하였음을 입증하는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제7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서류중 하나의 서류 1부(외국에서 육성된 품종의 종자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전자: 품종당 2만원 서면: 품종당 3만원 ※ 씨앗으로 증식하는 1년생 화훼류의 경우 25품종 단위당 1건으로 처리합니다.
------	---	--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활용 동의

이 신고서에 기재한 신고인의 개인정보를 종자산업법에 따른 해당 품종의 신고 접수 및 관리와 검역신고 관련 정보를 확인하는데 수집 및 이용하거나 해당 기관에 제공·활용하는데 동의합니다.

[] 동의 [] 거부

※ 위 개인정보 이용 및 제3자 제공·활용 동의는 해당 품종의 신고가 취소되는 날까지 유효합니다.(신고정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 위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활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외국에서 수입되는 과수작물, 고구마 및 그 밖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작물의 품종인 경우 해당 신고의 수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신고인(대리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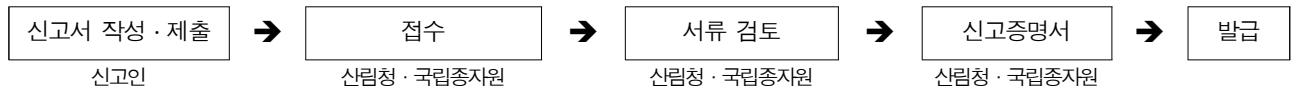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작성방법

1. ④ "품종이 속하는 작물의 학명 및 일반명"란에는 품종이 속하는 작물의 학명 및 일반명을 다음 예와 같이 정확하게 적어야 합니다. [예] 학명: *Allium cepa* L., 일반명: 양파
2. ⑤ "품종의 명칭"란에는 종자의 품종명칭을 정확히 기재하여야 하며, 품종명칭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일반종 또는 재래종이라고 기재 할 수 있습니다.
3. ③, ⑥란은 외국에서 육성된 품종으로 해당 정보를 알 수 없는 경우에 작성하지 않을 수 있으며, ⑧란의 경우 수입 판매 신고자는 적지 않아도 됩니다.
4. ⑪, ⑫란은 종자산업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과수작물, 고구마 및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작물로서 외국에서 육성된 품종의 종자를 신고하는 경우에만 작성하되, 해당 항목에 따라 제출하는 서류는 아래 사항을 갖추어야 합니다.
 - 1) 거래명세서 등 취득경로를 증명하는 서류: 해당 국가의 판매자(또는 양도자)가 발부한 작물명, 품종명, 수량, 판매업자명(또는 상호명), 거래일자 및 판매자의 서명 등의 사항
 - 2) 권리양도서 등 실시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육성자 또는 권리자의 사용 동의(서명 포함), 서명일자, 권리범위(증식, 생산, 판매 등 행위), 사용범위(품종명, 기간, 수량, 사용 국가명), 구매자(도입자)의 성명(서명 포함) 등의 사항
 - 3) 거래명세서 등 신규성을 갖추지 못한 품종임을 증명하는 서류: 해당 국가의 유통시장 등에서 해당 품종의 종자나 그 수확물이 그 시점에 판매가 이루어 졌다는 사실[신고일 기준 해당 종자나 그 수확물이 이용을 목적으로 양도된 시점이 외국에서 4년(과수 및 임목인 경우 6년) 이상된 경우]을 누구나 확인할 수 있고 인정할 수 있는 내용 등의 사항
5. 그 밖의 사항은 별지 제5호서식의 작성방법을 따르되, "신청인"을 "신고인"으로 보고 작성하여야 합니다.

처리절차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7조(품종의 생산·수입 판매 신고) ①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를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품종 생산·수입 판매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물건을 첨부하여 산림청장 또는 국립종자원장에게 제출(전자적 방법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 하여야 한다.	제27조(품종의 생산·수입 판매 신고) ① ----- ----- ----- ----- ----- ----- -----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4.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에 따른 위해성심사서 1부(유전자변형품종인 경우만 해당한다)	4.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승인서 또는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 생산승인서 1부(유전자변형품종인 경우만 해당한다)
5. 「식물방역법」 제17조에 따른 검역합격증명서 1부(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수입할 수 있는 금지품만 해당한다)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부(수입하여 판매하려는 경우만 해당하며, 신고하려는 자가 동의하여 산림청장 또는 국립종자원장이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운영하

6. (생 략)

<신 설>

는 식물검역통합정보시스템에
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가. 「식물방역법」 제17조에
따른 검역합격증명서

나. 「식물방역법」 제13조에
따른 격리재배 검역 결과
합격을 증명하는 서류

다. 「식물방역법」 제10조제
2항에 따라 수입허가된 금
지품의 계속사용 승인을
증명하는 서류

6. (현행과 같음)

7. 과수작물(果樹作物), 고구마
및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
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작물의
경우 해당 품종의 종자를 정
당하게 취득하였음을 입증하
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부(외국에서
육성된 품종의 종자인 경우만
해당한다)

가. 국제식물신품종보호동맹
(UPOV) 회원국에 출원 중
이거나 등록된 품종(이하
“외국보호품종”이라 한다)

으로서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17조에 따른 신규성을 갖춘 경우: 권리양도서 등 해당 품종의 육성자, 승계인 또는 품종보호권자로부터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실시를 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계약당사자의 성명, 서명, 품종 정보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서류

나. 외국보호품종으로서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17조에 따른 신규성을 갖추지 못한 경우: 거래명세서 등 신규성을 갖추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및 해당 품종의 종자에 대한 취득 경로를 명확히 알 수 있는 서류로서 계약당사자의 성명, 서명, 품종 정보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서류

다. 외국보호품종이 아닌 품

